

#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함으로써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
  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
  - 제1호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,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삭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, 제21조”를 “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“기본지원사업”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제2조제4호 중 “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”를 “시행령 제19조제4항 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2. "주민복지지원사업"이라 함은 읍.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, 주거환경의 개선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.

3. (생략)

4. 법 제10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 "1인당"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.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
연 락 처	(033)330-2540

# 관계 법령

## 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### 제10조 (지원사업의 종류 등)

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지원사업 :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

2. 특별지원사업 :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·시·군 및 자치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

3. 홍보사업 : 전력사업(電力事業)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, 환경·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(조사·연구 활동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, 대상 지역, 시행 기간,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제19조 (기본지원사업)

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(이하 "기본지원사업"이라 한다)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. 다만,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(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)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(이하 "주변지역 외의 지역"이라 한다)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

시행할 수 있다.

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(電源開發事業)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, 공공·사회복지사업, 주민복지지원사업,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.

⑤ ~ ⑨ 생략